

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수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81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30.

발의자 : 김수민 · 백재현 · 박선숙
김종훈 · 김삼화 · 김종회
신용현 · 김관영 · 추혜선
조배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27조는 정부가 국가표준 관련 연구개발, 국제협력,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 조항은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의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만으로는 정부 출연금이 어떠한 기관에 지급되어 사용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움. 한편 연구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은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」, 「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」 등).

이에 정부의 국가표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, 이들 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을

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27조).

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 제목 중 “출연금의 지원”을 “국가표준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시행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정부는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.

1. 국공립 연구기관
2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
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

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
4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기술대학
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 6.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
-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7조(<u>출연금의 지원 등</u>)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7조(<u>국가표준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시행기관 등</u>) ① 정부는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.</p> <p>1. 국공립 연구기관</p> <p>2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</p> <p>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</p>

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,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<u>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</u></p> <p>4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기술대학</p> <p>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</p> <p>6.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</p> <p>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</p> <p>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----- ----- -----.</p>
--	--